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49

발의연월일: 2020. 12. 30.

발 의 자 : 윤주경 • 윤창현 • 박수영

한기호 · 조명희 · 유의동

최승재 • 배준영 • 홍문표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25전쟁 중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6·25전쟁에는 국군 뿐만 아니라 21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였음에도 이들의 유해 발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의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① 국가는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 <신 설></u> |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발굴) ① |
| | 국가는 6·25전쟁 중 사망하였 |
| | 거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실 |
| | <u>종된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발</u> |
| | 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
| | <u>다.</u> |
| | ②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등 |
|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
| | 령령으로 정한다. |